## 입 법 정 보 2020-4호

## 목 차

1.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4
2.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
3. ~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5
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6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7
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7
7.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8
8.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9
9. 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10
1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11
11.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12
1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13
1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14
1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15
15.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15
1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16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17
18.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17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18
2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18
2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20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0
23.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1
2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22
25.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22
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2
2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23
2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24
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5
30.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25
31.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8
3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9
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0
3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1
3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1
39.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2
40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4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3
42.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3
4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34
4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4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6
47.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6

## 정부입법 예고

-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20. 2. 17.
- 마감일자 : 2020. 3. 31.
-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의견을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6617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관을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으로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기관 구체화(안 제23조제2항, 제48조제2항)
    - 1)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 관,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으로 확대
  - 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기준 신설(안 제74조)
    - 1)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등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검증에서의 부정행위 기준"을 준용
  -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 10)
-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20. 2. 17. 마감일자 : 2020. 3. 31.
  -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는 것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업자가 3개월 이상 공사중지 후 재개 시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 관의 장에게 공사재개 내용을 통보하도록 자구 현행화 및 서식 보완(안 제20조, 별지 제8호 서식)
    - 1) 기존의 별지 제8호 서식(착공, 준공, 공사중지)에 법 개정에 따 른 공사재개를 추가
- 3.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20. 2. 17.
     마감일자 : 2020. 3. 30.
  -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 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민관 공동의 상생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 2) 심의 자문 조정 기능을 수행
    - 나. 상생조정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1) 위원장(중기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을 고려하여 구성
      - 2) 당연직 : 중기부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 청 및 특허청 차장,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와 수 위 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
      - 3) 위촉직 :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 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중기부장관이 위촉
    - 다. 위원회 운영(안 제4조)
      - 1) 분기 1회 개최 원칙(필요시 수시 개최)
      -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
    - 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5조 및 제6조)
      - 1) 위원 임기는 2년,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

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촉 가능
- 마. 실무협의회(안 제9조)
  - 1)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20. 2. 17.
     마감일자 : 2020. 3. 30.
  -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혁신 현장간담회('19.11.8) 건의된 규제개선 과 제 반영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개정('17.7월) 내용 등을 반 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뿌리기업확인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9호, 2018.4.18.) 의 법적 근거 마련(안 영 제3조의2 신설)
      - 1) 기존 고시는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뿌리기업"을 정부에서 확인해 주는 절차 등을 규정하여 관 련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
      - 2) 해당 고시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뿌리기업 지원 사업의 대상 확인 및 가점부여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 특화단지 지정요건을 도시개발구역으로 확대(안 영 제24조제1항 개정)
      - 1) 시행령 제24조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은 산업단지 등에 기 조성된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뿌리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뿌리산업의 진 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 산업단지 등과 동일하게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뿌리산업의 집적 화가 가능한 도시개발구역(공업지역)으로 특화단지 지정요건을 확대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을 도모

- 다.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개정('17.7월) 내용을 동 분류체계 를 인용하고 있는 뿌리산업 범위 내용에 반영(안 영 [별표2] 개정)
  - 1) 시행령 제3조 [별표2]에서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맞 추어 뿌리산업의 범위를 규정
  - 2) '17.7월 개정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라 기존 뿌 리산업의 범위를 일치되게 개정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의 법령 활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2. 18.
   마감일자 : 2020. 3. 3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6382호, 2019.4.23, 공포, 2020.04.24. 시행)에 따라 승무원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관 런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가. '교육의 방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개정)
  - 나.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규정 (안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 다.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방법, 교육기관을 규정 (안 제3조의2 제3항 신설)

## 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제8호, 제33조의3 제1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국급경 사지안전협회의 안전관리 업무,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협 회의 감독 등 협회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재관 리대책대행자" 선정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안

제15조2)

- 1) 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안전점검, 계측기술 연구 및 개발 등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
- 나. 협회의 정관 등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정(안 제 15조의3,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 1)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협회 감독에 관한 사항 등 협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안 제15조의6)
  -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시 필요한 대행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20. 2. 19.
- 마감일자 : 2020. 3. 3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666호, 2019. 1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안전취약계층 대상 및 지원 범위 규정(안 제39조의2)
    - 1)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 및 주거·이용 시설 개선사업 등 지원범위를 규정
  - 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안 제39조의4)
    - 1)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제출, 예산·인력 확보 등을 규정
  - 다. 재난관리자원 범위에 시설 추가 및 관련 정보요청(안 제43조)
    - 1) 재난관리자원에 장비·물자·자재 외에 '시설'을 추가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를 위한 시설'과 '이재민 구호시 설'명시
    -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조치에 사용할 비 상대비 인력자원과 물품목록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 록 규정

- 라. 안전정보 공개 및 공동이용 협의회 구성 · 운영(안 제73조의7)
  - 1)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각종 안전진단 결과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정보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 금지토록 규정
  - 2) 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공동이용하기 위해 '안 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 구성·운영
- 마.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상 확대(안 제73조의9)
-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인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 립하여 개최 3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바.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요청 및 활용(안 제83조의2, 3)
  - 1) 중앙·지역대책본부장이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요청방법 및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용 권한 제한 등 준수사항을 규정

####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20. 2. 19.
   마감일자 : 2020. 3. 3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666호, 2019. 1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핵심기반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5조, 제5조의2)
  - 1)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나. 지자체장에게 재난관리 의무위반 처분근거 마련(안 제20조)
    -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권한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징계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2020. 2. 19.
     마감일자: 2020. 3. 30.
  -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한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821호, '19.12.10 공포, '20.6.11 시행)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위임받은 시행령에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의2 신설)
      - 1)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시·도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4명 및 지방재정·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나.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조정 (안 제12조의3제1항)
      -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에 안분하는 지방소비세액의 9분의 5의 35퍼센트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 지방소비세액의 35 퍼센트로 조정함.
    - 다. 전환사업보전계정 신설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별 재원·용도 정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안 제13조의5 신설)
      -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 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의 일부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납입됨에 따라 해 당 용도로 운용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환사 업보전계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의 각 용도 및 재원을 조정함.
    - 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 분석 및 성과 분석 평가의 절차 등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성과 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6월 30일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 분석에 대한 평가를 10월 31일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1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20. 2. 19. 마감일자 : 2020. 3. 30.
-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81호, 2019. 11. 26. 공포, 2020. 5.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요기관 및 계약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요기관을 정함(안 제 7조제1항 신설)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당해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나.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계약 대상을 지정(안 제7조제2항)
  -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
  -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 11.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2. 19. ● 마감일자 : 2020. 3. 30.

○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비행에 대한 승인 신청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하는 사항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43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야간 비행승인 권한을 지방항공청에 위임하고,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공시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무인비행장치 신고 대상 확대(안 제24조제5호)
  - 1) 드론 분류기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드론 신고 대상을 자체무게(연료 제외) 기준에서 최대이륙중량으로 변경하 고, 연료를 포함하여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초과의 비행장 치를 신고토록 보완
- 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26 조제1항제46호의2)
  - 1)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업무 등 집행업무가 지방청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

기관에 대한 집행업무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 다.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26조제1항제55호의2)
  - 1) 본부에서 승인하고 있는 특별비행승인 권한을 지방항공청으로 위임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업무와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개선
- 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육성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26 조제6항제11호)
  - 1) 항공안전법 제126조 제7항에 따라 추진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 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조 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기 위함
- 마.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하고자 하는 안전투자의 세부내역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10항제6호)

#### 1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예고일자 : 2020. 2. 19.

• 마감일자 : 2020. 3. 30.

○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비행에 대한 승인 신청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하는 사항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43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 등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확인토록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거짓 작성 시 통보절차 마련(안 제93조)
  - 1)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자가 과거 병력 등을 누락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체검사를 진행하면서 항공전문의사가 이를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나. 교육훈련비 환불 등 조종교육훈련생 보호장치 마련(안 제104조)
  - 1)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 시에 같이 제출하는 교육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 시 발급하는 훈련운영기준에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한사항을 추가토록 보완
- 다.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관리 강화(안 제295조 및 제295조의2)
  - 1) 경량항공기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관리를 위하여 교관 현황 변경 등 교육훈련체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항공교육훈련통 합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보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 마련
- 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 의무 강화(안 제306조)
  - 1)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12킬로그램 초과만 한정되어 있는 조종자격 필요 여부를 용도 구분 없이 250그램 초과부터 온라인 교육 이수 등 조종자격을 취득하도록 보완
- 마. 무인비행장치 비행구역 완화(안 제308조)
  - 1)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 교육목적에 한하여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최대이륙중량 7킬로그램 이하의 초 경량비행장치를 고도 20미터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개선
- 바. 항공교통사업자의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마련(안 제317조의2)
  - 1) 항공기 운용(정비, 부품 등 구매), 항공기 정비시설 등의 유지관 리에 관한 지출 등 안전투자 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 향후 2년간의 안전투자 계획 등 안전투자 공시의 범위도 마련
- 1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20. 2. 20.
     마감일자 : 2020. 3. 31.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절차와 방법을 마 련하고, 관리청의 시장이 제주도 행정시를 포함함에 따라 안전점검 결

과 통보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토록 개정코자 함.

#### ○ 주요내용

-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안 제15조 신설)
  -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시 필요한 대행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 제주도 행정시장이 포함되어 점검결과 통보에 특별자치도 포함 (안 제3조 개정)
  - 1)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만 통보하였던 것을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토록 개정

#### 14.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예고일자 : 2020. 2. 20.

• 마감일자 : 2020. 3. 31.

- 119구급대원의 교육·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 등 구급서 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선임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선임방법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구급지도의사 선임 방법 보완(안 제27조의2제1항)"
    - 1) 구급지도의사를 각 기관별(소방서, 소방본부)로 선임함으로써 지역별 운영에 편차(응급의학전문의 부족, 졸속평가)가 발생함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의 책임성 및 구급활동에 대한 간접의료지도 의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어, 구급지도의사의 선임·위촉 시에 의료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5.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예고일자 : 2020. 2. 20.

• 마감일자 : 2020. 3. 31.

○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거짓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안 제10조제1항 및 별표)
  - 1)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등"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를 차등화
    - \*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금액 비율에 따른 행정처분 일수 기준 마련

# 1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20. 2. 20.
- 마감일자 : 2020. 3. 31.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제16444호, 2019. 8. 20. 공포·시행)으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환부대상이 확대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회복대상재산, 피해회복금 등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 나. 환부절차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부절차 개시규정 신설(안제3조)
  - 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검사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보관하고 있음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의 기간 내에 환부청구를 하도록하는 등 환부청구기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제1항)
  - 라. 환부해야할 범죄피해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기존에 신청하였던 환부대상자에게 추가로 환부할 근거규정 신설(안 제9조)
  - 마. 검사의 환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환부 청구인이 일정 기간 내에 그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 바.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범죄피 해재산환부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근거규정 신설(안 제11조)
  - 사. 본 시행령에 의한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범죄

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14조)

####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20, 2, 20.
- 마감일자 : 2020. 3. 31.
-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일부 업종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마련 등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 1) 법률 개정으로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한 수급계획 수립,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재료비축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 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자 현장 배치기준 완화 (안 제18조)
  - 1)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일부 전문문화 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
- 다. 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종 신설 등 (별표 7, 8)
  - 1) 과도한 등록요건으로 인해 등록된 업체가 전무한 여건을 고려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도모

## 18.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20. 2. 20.
- 마감일자 : 2020. 3. 31.
-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온라인 시스템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확보 됨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에 유아의 건 강검진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개정(안 제2조의5제4항)
-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20. 2. 21.
- 마감일자 : 2020. 4. 1.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개정(법률 제16925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을 통해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을 경찰관서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형집행법 시행령」제143조가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위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조에 신설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2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20. 2. 21.
- 마감일자 : 2020. 4. 1.
- 현행 6개 직접지불제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공포)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칭

- 1) 시행령의 명칭을 법률 개정에 따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1)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시·도지사로 하여

금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소규모농가의 범위(안 제4조)

- 1)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구성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혼인 외의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같은 세대로 봄
- 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 요건 및 지급단가 등(안 제7~8조)
  - 1) 소규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등록된 농지등의 면적의 합, 소유 농지등의 면적의 합, 영농종사·농촌거주, 지급대상자의 농외 소득금액, 소규모농가 구성원의 농외 소득금액의 합, 지급 대상자의 축산·시설재배업 소득금액 등의 세부기준을 정함
- 마.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단가 및 지급상한 등(안 제9~11조)
  - 1) 기준면적 구간을 농지등의 유형별로 3개 구간으로 하고, 구간별 단가는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2) 지급상한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구분하여 정함 바. 준수사항 및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안 제12~16조)
  - 1)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기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 이수 기 준, 그 밖에 준수사항 및 기준을 정하고,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 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 획을 수립토록 함
- 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안 제17~21조)
  - 1) 등록신청 및 준수사항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급 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체납가산금 요율 등에 대한 사항을 규 정함
- 아.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운영(안 제22~53조)
  -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오고, 환수 및 지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2) 밭농업직접지불제 명칭을 논활용직접지불제로 변경하고, 논활용 작물의 정의, 대상농지, 지급 요건, 환수 및 지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 보칙(안 제63~68조)
  - 1) 자료제공의 범위 및 방법, 지도등의 범위, 관리기관의 지정·운 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차. 시행 및 주요 경과조치(안 부칙 제1~7조)
  - 1)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함

## 2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20. 2. 21. 마감일자 : 2020. 4. 1.
-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개편하고, 서민금융 출연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이와 함께 재원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체계 및 계정체계 등을 개편하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원권리자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객보호장치들을 강화하고자 함.

##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2. 21. 마감일자 : 2020. 3. 2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382호, 2019.4.23. 공포, 2020.04.24. 시행)되어 교통사업자가 고용한 승무원 등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통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에 저상버스등의 운 전자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추가(안 제15조의4 신설)

## 23.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20. 2. 24. 마감일자 : 2020. 4. 6.
-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소하천 관련 기술을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소하천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종합계획・중기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중 기초・타당성 조사 등 전문성과 기술력 등 경험이 풍부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소하천 점・사용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소하천 설계기준 신설(안 제2조의2)
  - 1)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 정비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 1)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
- 다. 점·사용 허가를 폐지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
  - 1)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가 실효 되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
- 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시 통지방법 등을 근거 신설(안 제21조의3)
  - 1) 타인의 토지에 출입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
- 마. 타인의 토지에의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안 제23조)

## 2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2020. 2. 24.
   마감일자: 2020. 4. 6.
-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소하천 등 설계기준의 보급 및 소하천점용 등의 업무처리 세부기준과 폐천부 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하천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보급기관 및 단체 선정 기준 규정 신설(안 제2조의4)
  - 나. 점용ㆍ사용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을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 다. 폐천부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을 규정(안 제16조)
  - 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시 토지출입권한증명서를 별지 제22호서식 으로 규정(안 제19조)

## 25.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20. 2. 24.
  - 마감일자 : 2020. 4. 6.
- 연근해어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척추진을 위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기간 단축 (안 제3조제4항)
    - 1) 정부는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기간이 현행 120일(4개 월)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매년 감척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연근해어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척추진을 위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 기간을 단축(60일)

## 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2. 24. 마감일자 : 2020. 4. 6.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시 조합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6630호,

'19.11.26 개정, '20.5.27 등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체계 업무 위탁고시 근거 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대상 주택(안 제4조의2 신설)
  - 1)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 및 준주택은 30세대 이상인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원을 공개모집 하도록 함
- 나. 조합원 모집시 설명 및 확인 등(안 제4조의3 신설 등)
  - 1)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사업개 요,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등으로 확인 받아 교부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 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
- 다. 가입비등의 예치기관, 예치방법 및 예치금의 관리(안 제4조의4 등 신설)
- 1) 모집주체와 예치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등에 가입비등을 예치 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 라.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안 제4조의5 등 신설)
  - 1) 가입계약 체결 30일 이후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모집주체는 반환 요청을 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의 장은 지급·반환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함.
- 마. 임대주택정보체계 업무위탁 고시(안 제52조 신설)
  - 1) 임대주택정보체계(임대등록시스템,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한 위탁 기관 및 업무 등을 각각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2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20. 2. 24.
   마감일자 : 2020. 4. 6.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19.12.3.)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건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국가로부터 학

생에게 지원하는 학비를 받을 수 있는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학비지원 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안 제70조의2 및 별표 25 신설)
  - 1) 카지노기구 검사의 신뢰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카지노기구 검 사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기준 등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 정 요건을 명확히 함.
- 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안 제71조의2 신설)
  - 1)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다.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안 제71조의3 및 별표 26 신설)
  - 1)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 2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20. 2. 25. 마감일자 : 2020. 4. 6.
- 소비량 및 수입량이 많고 전문음식점이 대중화된 다랑어, 아귀 및 주 꾸미를 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81호, 2019. 10. 29. 공포, 2020. 4.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 추가 품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시대상 품목 추가(별표 4 안 제3호마목)

- 1)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 표시 대상별 표시방법 관련 규정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추가 \* 공통적 표시방법,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 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 사유에 해당하여 전매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도록 하는 의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시설 및 설비 등의 상태 설명・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62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환매에 필요한 절차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안 제46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 30.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예고일자 : 2020. 2. 26.
 마감일자 : 2020. 4. 6.

○ 관광·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등 청소년의 취업 준비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숙박업의 범위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로 다양한 신원확인 방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나이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위원에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매체물심의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청소년보호법」개정(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공포, 2018. 12. 11.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개선(안 제6조제1항제1호 개정)

- 1) 청소년의 교육훈련·실습을 위해 현장실습계약이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광진흥법 등을 적용받는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 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보완(안 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 1) 다른 법률에 따라 신원이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추가
- 다.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7조제1항제4호, 안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안 제26조제1항 개정)
  - 1) 청소년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 라.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등 보완(안 제34조제3 항 및 제4항 개정)
  - 1)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매체물 심의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 31.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20. 2. 26.
- 마감일자 : 2020. 4. 6.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도록 권유·유인·강 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구매하게 한 자를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으 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 이 개정(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공포, 2018. 12. 11.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20. 2. 26.
- 마감일자 : 2020. 4. 6.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발생한 이상사례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 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및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1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이상사례 조사·분석 결과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이상사례 보고의접수 등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확보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품질관리인의 학력 및 경력 등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품질관리인을 고용하려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의 영업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 가. 건강기능식품과 보고된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이상사례 내용 및 주의사항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위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업소명, 이상사례 내용 및 주의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이상사례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원료·성분별 및 이상사례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나.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및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 다.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사'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종전 1년의 제조업체 종사경력요건을 삭제하고,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식품관련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경력요건을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비식품관련 학사 학위를 받거나 전문대에서 식품관련 학위를 받은 경우 경력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력요건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 라. 영업자 등이 이상사례를 알게 되었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여야 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 75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으로 규정함(안 별표 2)

#### 3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20. 2. 26.
- 마감일자 : 2020. 4. 6.
- 영업자 등이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1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선임된 품질관리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시간을 현재 6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교육은 16시간, 보수교육은 6시간으로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27 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다만, 사망을 초래하거 나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중대한 이상사례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 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선임된 품질관리인은 6시간 이내의 신규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로 선임된 품 질관리인에 대한 품질관리 실무교육 강화를 위하여 신규교육은 16시간, 보수교육은 6시간으로 규정함(안 제19조)
- 다. 다양한 형태의 제품 출시와 트랜드 변화에 맞추어 건강기능식품의 내포장이 완료된 제품의 외포장 공정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안 별표1, 업종별 시설기준, 별표4. 영업자 준수사항)

## 3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20. 2. 27.
- 마감일자 : 2020. 4. 7.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

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등 권한을 위임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위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명환경관리구역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범위를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 야로 확대(안 제34조제4호)
  - 1)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 중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범위를 현행 전력산업 분야에서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로 확대하 고, 공공기관이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도 포함

## 3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20. 2. 27. 마감일자 : 2020. 4. 7.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에 조명기구에 대한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을 가진 자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검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역량을 가지고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리대상 조명기구의 증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빛공해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지정요건, 절차 등 세부기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규칙은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할 경우 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로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어 명확화(안 제4조 및 제5조)
  - 1) 현재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변경 등을 할 경우 빛 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 규칙에 '영향 조사'로 되어있어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빛공해환경 영향평가'로 명확히 함
- 나.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 1) 빛공해 검사기관의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 빛공해 검사기 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과지정 절차, 변경신고의 절차와 그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함
- 다. 빛공해 검사 업무의 절차 및 방법(안 제11조의3)
  - 1) 빛공해 검사 신청, 빛공해 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절차와 방법 및 그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함
- 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 1)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지정 취소 혹은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 정함
- 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2020. 2. 27.
     마감일자: 2020. 4. 7.
  -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면제대상자가 스스로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관련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방법 마련 (안 제5조의2, 제13조)
  - 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기준 및 판정방법, 품질등급 표시·공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안 제20조의 2, 3, 5, 6 및 별표7)
- 3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20. 2. 27.
- 마감일자 : 2020. 3. 9.
-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29)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문위원회 구성 근거 별도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 1)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비용 심의 절차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담보할 필요가 있어 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 설치 근 거를 별도로 정하고 위원 구성 시 기재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 와 지자체의 참여 제도화
- 3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20. 2. 27. 마감일자 : 2020. 4. 7.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체계의 경우, 수입액이 높아 질수록 과징률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이고 매출 등급 구간이 구간 내 정신의료기관 매출 분포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설정되는 등 문제가 있어, 적정과 징률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역진적 구조를 해소하고 정신의료기관 매출 분포에 맞추어 배출 등급 구간을 세

분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39.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20. 2. 27.
- 마감일자 : 2020. 4. 7.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받 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래치료 명령 제도가 외래치 료 지원제도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신질 환자가 충분한 재활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재 활시설의 입소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40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2. 27. ● 마감일자 : 2020. 4. 8.

-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특수관계자·계열사 간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25조제10호의2)
    - 1) 부도 등 법령에 명시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 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용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현행 '계약 후 2년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 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허용규정' 삭제
  - 나.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안 제25조제11호)
    - 1) 전매가 허용되는 PFV의 요건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로 강화

## 4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2. 27. 마감일자 : 2020. 4. 8.
- 특수관계자・계열사 간 전매 등 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PFV 전매 허용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13조의3제9호의2)
    - 1) 부도 등 법령에 명시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 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현행 '계약 후 2년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 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허용규정' 삭제
  - 나.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13조의3)
    - 1) 전매가 허용되는 PFV의 요건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로 강화

## 42.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20. 2. 28.
   마감일자 : 2020. 4. 8.
-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680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을 구체화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 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보상기준을 정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외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가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민간기구를 정함
-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이 필요한 지역

(안 제9조의 2 신설)

- 1) 정부가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는 지역 추가
- 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안 제10조, 별표 1 신설)
  -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활동 및 이에 따른 보상 기준을 제시
- 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 지원(안 제10조의2 신설)
  - 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상 국민신탁법 인 외에도 국민신탁 활동을 목적으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 자산을 취득하여 보전 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하 는 비영리법인도 포함
- 라. 권한 및 업무의 위임 위탁(안 제16조, 제16조의2)
  - 1)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정당한 보상 권한 및 업무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 국립공원공단 등에 위임 위탁

## 4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예고일자 : 2020. 2. 28.

• 마감일자 : 2020. 4. 8.

- 예금보험금 지급 시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는 예금담보대출 등의 금액을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도 차감함으로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중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현행 기말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변경하여 업권간형평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예보료 부과대상에서 차감 (안 [별표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제8호 신설)
    - 1)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차감함

- 나. 보험업권 예금보험료 부과 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평균잔액으로 변경(안 [별표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제9호 신설)
  - 1)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 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변경
- 다.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의 적용범위 명시(안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신설)
  - 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에 대해 서는 종전의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 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4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2. 28. 마감일자 : 2020. 4. 8.
-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체의 긴급 지원 방안(2020.2.17)의 일환으로 항공기의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수리·개 조승인 신청 시 항공기 증명·승인 수수료의 50% 감면기간을 2년 연 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신청 시 납부하는 항공기 증명·승인 수 수료에 대한 50% 감면기간을 2년 연장('20.6→'22.6) (별표 47)
    \* 감항증명, 수리개조승인, 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승인) 등

## 4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2. 28. 마감일자 : 2020. 4. 8.
-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버스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ISO)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허용될 수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안전띠 성능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휠체어 탑승공간 • 승강구 • 고정장치 및 승강장치 등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기준 마련 (안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 1 신설)

나.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가 국제 표준화 기구(ISO) 성 능기준을 충족하도록 함(「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 기준」제3항 나목 3) 개정)

##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20, 2, 28.

• 마감일자 : 2020, 4, 9,

○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된 침샘암과 담낭암 에 대한 상이등급별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 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47.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20. 2. 28. ● 마감일자 : 2020. 4. 8.

○ 사학 운영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상황 에서 사학법인 이사회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친 족이 개방이사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연장하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 고자 함. 아울러, 대학평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과 사립학 교법 시행령 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관 련 내용을 통일하여 정하고자 함

- 가.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이 설 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신설(안 제7조의2제5항)
- 나.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안 제8조의3 개정)
- 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임원이 1 천만 원 이상 배임ㆍ횡령한 경우를 추가하고, 회계부정 금액 기

준을 대학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3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안제9조의2제1항 개정

라. 평의회 구성단위에 조교를 추가(안 제10조의6 개정)